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환경관리 Q&A

회원사 및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및 관리자분들의  
환경관리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자주 질의·문의·상담되는 환경관리 질의응답 사례를  
제작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방지시설면제사업장 환경기술인 선임은?

철강업체로 가열로(슬라브 및 빌렛등 가열용)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열로 관련 대기2종 사업장입니다.(수질4종) 당연히 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 선임대상이지만 가열로용 연료를 LNG(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관계로 방지시설면제사업장입니다. 이경우 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만 선임되는건지, 아님 대기5종 환경기술인에 준하여 선임하면 되는건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라 전체 배출시설에 대하여 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받은 사업장은 5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부 대기관리과(044-201-6908)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Q**

폐수 다이옥신 측정 여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운영 중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거 12개월에 1회씩 폐수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직전 폐수 다이옥신 측정일: 2012. 1. 19) 당 시설이 2012년 7월 ~ 2013년 7월까지 설비 대보수

공사로 인한 설비 미가동으로 2013년 폐수 다이옥신 측정은 미실시한 상황이며, 폐기물처리시설 변경으로 인해 변경 승인을 하고, 곧 설치검사를 실시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에 의거 2013년 폐수 다이옥신을 2013. 1.19 이전에 미실시 하였기 때문에 시설이 정상 가동되는 즉시 폐수 다이옥신을 측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승인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가동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폐수 다이옥신 측정을 실시해도 되는지요?

**A**

다이옥신 자가측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별표6]에 의하여 주기별로 측정하여야 하며, 자가 측정기간의 연기는 불가하며, 정기보수공사가 예정되어 있으면, 자가측정을 미리 앞당겨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고장 등 수리로 인하여 자가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고장 등으로 인하여 가동하지 못함을 확인받아야 하며, 차후 가동개시 후 바로 자가측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Q**

공동방지시설로 유입 처리되는 폐수처리는?

전기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당사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공동방지시설에 모두 유입(150m<sup>3</sup>) 하여 처리한 후, 전량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 검토 중입니다. 공동방지시설에는 당사 외 타사 폐수도 같이 처리되므로 공동방지시설에는 폐수배출량에 대한 적산유량계는 부착되어 있습니다.(공동방지시설 운영 주체 : 타사)

당사 폐수배출량만을 별도로 산정할 수 없는 상태로 적산 유량계를 부착해야 한다면 공동방지시설 유입전에 설치하는 방법 뿐인데, 폐수 원수에 적산유량계를 설치시 유량계 정확도를 보증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공동방지시설 유입되는 폐수 원수에 대한 ‘적산유량계’ 부착해야 되는지요? 시행규칙 별표 7 비고에서 6항 ‘나’를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 유입하는 경우 적산유량계 부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시에는 용수 사용량 및 폐수배출량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당사 경우에는 용수 전량을 그대로 사용 후 발생되는 폐수 원수를 모두 공동방지시설 처리 후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므로 용수 적산유량계 검침값으로 용수사용량, 폐수배출량 동일하게 작성해도 되는지요?

**A**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1의 나목에 따라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전량유입시키는 사업장의 경우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부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용수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이 동일하다면 운영일지에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Q**

대기 배출허용기준 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 제15조 관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사용중인 보일러(증발량 40톤 이상, 2001년 6월 30일 이전설치)는 액체연료(방카씨유 0.3%) 및 기체연료(공정부생가스)를 혼합하여 사용중에 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대비하여 액체연료(방카시유 0.3%)는 사용을 중지하고, 기체연료(공정부생가스)만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상기와 같이 보일러연료를 기체연료만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는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150(4)ppm을 적용하면 되는지요?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의 배출시설란 비고 8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란 해당 연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했거나 설치 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단,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당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포함)를 받은 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 보일러의 폐쇄에 따른 신규설치가 아닌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설치·운영된 기존 보일러에 대한 단순연료변경만 할 경우에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 설치시설로 적용받아 150(4)ppm이 적용됩니다.

